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 비교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조 흠 학*·이 관 형*

I. 서론

현행 산안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2006년 개정시에 강화되었다. 이렇게 강화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재해자수는 해마다 늘어 2002년에는 2,605명 2003년은 2,923명 2004년에는 2,825명으로 3천여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안법의 법률적 구속력 확보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산안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이 실제 발생한 재해결과 보다 단순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미흡으로 인한 과실 책임으로 경미한 처벌로 나타나고 있다.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은 법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법의 준수와 별개의 문제로 처벌의 형량 정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벌의 형량과 처벌규정의 법률적 특성, 그에 따른 관례동향을 찾아서 위반의 사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 속에 나타난 사용자의 책임의 결과를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산업재해 책임의 명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세계 각국의 산안법의 형사처벌제도의 사례 연구'를 발췌하여 수정 정리한 논문임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II. 우리나라의 산안법 처벌현황

1. 우리나라 산안법의 체계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근로자 보호 입법인 최고노동시간법(Regulations on Maximum Working Hours)과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 제정 되었으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114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¹⁾

1948년 제1공화국 헌법 제17조(현행 헌법 제 32조)에서 “근로조건은 법률로서 정하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한지 약 5년 후인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노동법으로서는 최초의 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태동되었으며, 이 법에서 사업장의 기계, 기구, 설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동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제 하였으며 산안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약 28년간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①위험방지(법 제64조) ②안전장치(법 제65조) ③특히 위험한 작업(법 제66조) ④유해물(법 제67조) ⑤위험작업의 취업제한(법 제68조) ⑥안전보건교육(법 제69조) ⑦병자의 취업금지(법 제70조) ⑧건강진단(법 제71조) ⑨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법 제72조) ⑩감독상의 행정조치(법 제73조)로 구성되어 있다.

산안법의 별칙규정은 중화학공업의 추진으로 급격한 산업변화와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작업의 시행에 의한 산업재해 대형화,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기준에 따른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장내에서 이러한 처벌규정을 만든 것은 산업안전의 인식변화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제정당시의 산안법과 현행 산안법의 처벌규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별칙규정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1천만 원의 벌금, 500만 원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지만, 제정당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실형이 되어있지 않았다. 당시의 2년이하의 징역형을 적용 할 수 없었던 배경은 산재사고가 사업주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주의의 무가 큰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징역형 대상인 제정법률 제18조를 보면 “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온 또는 배출되는 기체·액체·잔재물과 계측기의 감시·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일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2003.11, 3쪽.

으킬 때” 처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건강장해라는 것은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어 건강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어 질병이 발생 되어야만 산재사고에 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산재사고 이전에 적정기준을 두고 직업병 발생의 예방적 차원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실행제도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책임을 제정법률보다 높아진 것은 산재발생을 억제하고 작업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고 책임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산안법 위반에 관한 처분결과

우리 산안법 위반에 관한 최근 사법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처리현황²⁾을 살펴보면 구속대상보다는 불구속의 내용이 많고, 사법판단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므로 사법적 판단에 실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위반에 관한 처벌을 판결하기도 한다.

<표1>산안법 관련 범죄자 처분결과¹⁾

년도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협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4	7,687	6,606	15	89	6,502	1,056	447	558	-	51	15	10	-
2005	6,537	5,050	5	50	4,995	1,476	672	764	-	40	8	3	-
2006	4,496	3,368	3	116	3,249	1,119	507	567	-	45	9	-	-
2007	4,490	3,487	3	93	3,391	1,000	396	570	-	34	3	-	-

<표2>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조사 및 조치 실적¹⁾

구분	발생 건수	사법조치			행정조치						
		계	구속	불구속	계	작업 중지	사용 중지	안전진단, 개선계획	안전관리자 증원 명령	과태료 부과	시정 지시등
2005	996건	955	2	953	1093	242	58	73	2	207	511
2006	949건	665	3	662	578	271	57	·	·	138	112
2007	959건	732	4	728	758	364	41	·	·	160	193

2) 조흥학, 「산재발생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56~68쪽 참고.

우리 산안법 위반내용에 따른 검찰의 구속 기준을 살펴보면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7년 이하 징역, 1억 원이하의 벌금)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은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또는 1년에 3건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유해·위험기구 등 방호조치 등 의무 위반(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은 3개월 이상의 중대재해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시, 혹은 직업병환자 또는 중독자가 동시에 20명 이상 발생시, 작업중지 등 불이행, 유해작업 도급, 보건유해물질 제조, 보건유해물질 무허가 제조, 감독기관에 신고한 근로자 해고, 영업정지명령위반등(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관해서는 재범자, 혹은 산재다발사업장이면 구속을 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의 법정형에 관해서는 구속하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³⁾ 즉 불구속처리를 하고 있다.

최근 1999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노동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의 지도감독으로 인한 행정조치 건수는 48,508에 이르고 있는데 사법조치 건수는 행정조치의 1/20의 수준에 이르는 2,238에 미치고 있다. 년도별로 비교해 보아도 사법조치 수준은 행정조치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조치 실적¹⁾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사업체	23,390	35,300	26,016	28,575	35,919	52,989	58,656	54,629	50,716
위반업체	19,499	28,890	22,427	24,803	30,903	46,213	43,698	44,912	45,299
행정조치	17,589	29,270	24,240	29,879	34,849	45,738	38,216	44,594	48,508
사법조치	3,406	4,391	3,192	2,051	2,214	2,445	1,449	1,356	2,238

3. 산안법 위반에 관한 판례의 유형

우리 산안법상의 사례를 사업주의 의무위반, 의무자의 범위, 사고예방조치의무 미흡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업주의 의무 위반

2003년5월22일경 신축공사 현장에서 C주식회사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D가 5층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주식회사에게 발주한 건축물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이 사건⁴⁾의 쟁점은 피고인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피해자D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등을

3) 노상헌, 「산안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150~151쪽.

4) 의정부지방법원 2005.3.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을 물어 산안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이 판결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양벌규정으로 처벌 되지않고, 사업주와 행위자가 같이 처벌됨을 확인한 판례이다.

또한 2008년 1월 7일 이천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000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리아2000대표 공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김모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2000 냉장공무팀 김모 팀장과 김모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업주의 의무위반으로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에서 대표자는 벌금 2천만원과 나머지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들이 대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였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고에 비하면 그 처벌은 매우 미미 하였다고 본다.

2) 산안법상 의무자의 범위

A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제조물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층 공장건물 중 2층을 임차하였는데, 이 공장건물에 배수시설이 부족하자 개인공사업자인 C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 C는 공사에 필요한 인부 8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사전반에 관해 B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책임 하에 배수로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경우에 C에 대한 사업주로서 인터록 장치 부착에 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건물을 임차한 사업주가 B이므로 승강기 관리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대법원의 판결⁵⁾은 넓은 범위속에 '사용'의 의미에서 B가 포함되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이다.⁶⁾

5)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도8875 판결.

6) 이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누구라도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사용에의 제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

3) 사고예방조치의무 미흡

2005년 8월26일경 을이 경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인 갑은 을의 부재 시 덤프트럭에 장착된 연료탱크의 구멍이 난 부분을 용접해달라는 의뢰인 병의 부탁을 받고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연료탱크의 폭발로 사망한 사건이다.⁷⁾

이 사건의 쟁점을 보면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의 의무위반 책임이 성립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의 제거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III. 미국 산안법의 처벌현황

1. 미국 산안법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산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미국은 철저한 자유방임정책으로 노동조건 개선이나 빈부격차의 해소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며 미국사회는 더욱 보수화 되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힘입은 진보주의나 정부의 시장개입주의는 물론 트루먼의 페어딜정책 등에 힘입은 흑인의 인권개선과 같은 민권 정책이 크게 후퇴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 노동보호정책은 매우 미비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960년대 들어 민주당의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진보정치는 여러 가지 사업장 안전보건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 산안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의 1970년대는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어 정부간섭주의의 노선을 택하였고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진보적 입법이 계속되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다. 1980년대는 여전한 경제위기속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 소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지칭되는 보수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지출의 축소와 감세정책,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회복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유지 하였다. 이러한 경제기조는 정권과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교차 할 때마다 순환을 반복하여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경제를 기조로 하는데 양당의 입장이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7)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8) 박두용, 「주요선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일원화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 27~

부시행정부는 과도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규제 최소화 및 자율규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현재의 오바마 미 정부는 미국노동자보호법안(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PAWA)을 통한 산안법 규정 강화방침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노동안전규제강화 방침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산안법의 집행범위 및 집행력은 미국의 정권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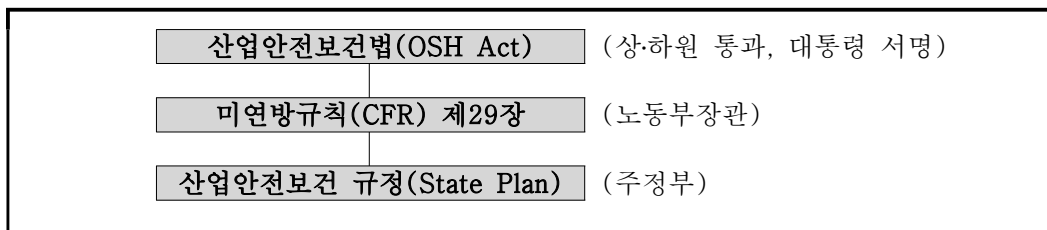
2) 미국의 산안법 체제

미국법은 일반적으로 영미법이라고 하여 판례법 또는 불문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성문법전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법은 모든 분야에 걸쳐 성문법이 존재하지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판례 등을 입법으로 보는 등 불문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법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칙 제29장(29 CFR)⁹⁾이 중심규정이다.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으며, 이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된다.

50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은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에 각각 고유한 법률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조직이 있다. 산안법(OSH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고, 시행령(CFR)이 제정되어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상당수의 주에서는 각자 고유한 산업안전 관련법과 시행령이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연방법으로 정한 산안법보다 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하는것도 가능하다.

<표 4>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¹⁾



31쪽.

9) 노동부소관 규칙으로서 6개의 Parts가 있는데 수평적기준(Horizontal)으로 29 CFR Part 1910: 모든 일반업종,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기준(Vertical standards)으로 29 CFR Part 1915 : 조선업(Shipyards), 29 CFR Part 1917 : 하역부두(Marine terminals), 29 CFR Part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29 CFR Part 1926 : 건설업(Construction), 29 CFR Part 1928 : 농업(Agriculture)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산업법의 집행은 대부분 각 주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산업법(OSHAct)이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안전위생에 관하여 주나 기업, 그리고 조합을 지도, 지원하는 권한을 규정한 근거가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산업법(OSHAct)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집행체제는 OSHA의 안전보건감독관들의 점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감독관들은 사업체의 시설을 방문하여 당해 시설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¹⁰⁾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한다¹¹⁾.

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내용

미국 산업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으로 나누어 지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사 벌칙에 대한 벌금 규정

가) 고의 또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한 벌금 규정

고의적인 위반이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도 범한 위반으로서 사업주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반복적인 위반이란 재점검 결과 이전에 위반으로 통고된 기준, 규정, 규칙, 명령 등을 다시 위반한 경우로서 장소나 기계 등이 지난번과 같은 것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위반을 한 경우 산업법 제5조¹²⁾ 및 제6조¹³⁾에 따라 공포된 기준, 규칙 또는 명령, 혹은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Willful or repeated violation), 위반한 사업주에게 각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70,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0불 이상을 부과 할 수 있다.¹⁴⁾

10) OSHA, 「OSHA's Field Operation Manual(FOM)」, 2009.

11) 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Imminent Danger), ② 재난(Catastrophe)이나 사망(Fatality)재해가 발생 하였던 사업장, ③ 근로자들의 진정(Employee Complaints)이 발생한 사업장, ④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정 산업, 직종, 물질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점검(Programmed high-hazard Inspections), ⑤ 심각한 법위반으로 경고한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Follow-up Inspections)

12) OSHAct §5 Duties (a) Each employer --

(1) shall furnish to each of his employees employment and a place of employment which are free from recognized hazards that are causing or are likely to cause death or serious physical harm to his employees;

(2) shall comply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romulgated under this Act.

(b) Each employee shall comply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all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issued pursuant to this Act which are applicable to his own actions and conduct.

13) OSHAct §6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나) 중대한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규정

중대한 위반이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위험성을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의 위반이며 경미한 위반이란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으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위반으로서 산안법에서는 두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두 위반에 관한 벌금 규정을 살펴보면 산안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포된 기준, 규칙 또는 명령, 혹은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serious violation)¹⁵⁾ 위반장을 발부받은 사업주에게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¹⁶⁾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violation determined not serious)¹⁷⁾에도 7,000불 이하의 벌금¹⁷⁾을 부과 할 수 있다.

다) 위반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규정

산안법 제9조 제(a)항에 따라 위반장이 발부된 사항을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못한 (Failure to correct violation) 경우(당해 기간은 사업주가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벌금을 지연시키거나 피할 목적이 없이 법 제10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¹⁸⁾의 최종명령이 있기까지 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당해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1일당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¹⁹⁾

14) OSHAAct §7 (a) Any employer who willfully or repeatedly violate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of this Act, any standard, rule, or order promulgated pursuant to section 6 of this Act, or regulations prescribed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ssessed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70,000 for each violation, but not less than \$5,000 for each willful violation.

15) "본조의 목적상, 사업주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존재를 알지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작업장소에서 채택된 실행방안, 수단, 방법, 운용 또는 공정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OSHAAct §17 (k))

16) OSHAAct §17 (b) Any employer who has received a citation for a serious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of this Act, of any standard, rule, or order promulgated pursuant to section 6 of this Act, or of any regulations prescribed pursuant to this Act, shall be assessed a civil penalty of up to \$7,000 for each such violation.

17) OSHAAct §17 (c) Any employer who has received a citation for a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of this Act, of any standard, rule, or order promulgated pursuant to section 6 of this Act, or of regulations prescribed pursuant to this Act, and such violation is specifically determined not to be of a serious nature, may be assessed a civil penalty of up to \$7,000 for each violation.

18) "심의위원회는 사업장의 규모, 위반사항의 경중, 성실성 및 기위반여부를 근거로 본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민사처벌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OSHAAct §17 (j)).

19) OSHAAct §17 (d) Any employer who fails to correct a violation for which a citation has been issued under section 9(a) within the period permitted for its correction (which period shall not begin to run until the date of the final order of the Commission in the case of any review proceeding under section 10 initiated by the employer in good faith and not solely for delay or avoidance of penalties), may be assessed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7,000 for each day during which such failure or violation continues.

라) 게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 규정

산안법의 규정에 따른 게시의무(Violation of posting requirements)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²⁰⁾

2) 형사 벌칙에 대한 벌칙 규정

가) 고의적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Willful violation causing death to employee)의 벌칙 규정

산안법 제6조에 따라 제정된 기준, 규칙, 명령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1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1회이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2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나) 점검 누설 및 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벌칙 규정

장관이나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사전 승인 없이 법에 따른 점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1,000불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²²⁾ 또한 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할 신청, 기록, 보고, 계획 또는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10,000불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할 수 있다.²³⁾

20) OSHAAct §17 (i)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of the posting requirements, as prescrib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assessed a civil penalty of up to \$7,000 for each violation.

21) OSHAAct §17 (e) Any employer who willfully violates any standard, rule, or order promulgated pursuant to section 6 of this Act, or of any regulations prescribed pursuant to this Act, and that violation caused death to any employee, shall, upon conviction,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both; except that if the conviction is for a violation committed after a first conviction of such person, punishment shall be by a fine of not more than \$20,000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both.

22) OSHAAct §17 (f) Any person who gives advance notice of any inspection to be conducted under this Act, without authority from the Secretary or his designees, shall, upon conviction,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0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both.

23) OSHAAct §17 (g) Whoever knowingly makes any false statement, representation, or certification in any application, record, report, plan, or other document filed or required to be maintained pursuant to this Act shall, upon conviction,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both.

3. 산안법 위반의 처벌 현황

미국의 OSHA는 2008년 한해 동안 38,591건의 감독을 실시하여 121개 이상의 사업장에 각각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였고, 근로자의 불만제기, 사고 발생 및 참고조사 등으로 연간 15,565건의 비계획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망재해와 관련된 점검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5>OSHA의 주요 점검 관련 현황1)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검활동(계)	39,167(건)	38,714(건)	38,579(건)	39,324(건)	38,591(건)
정기점검(계)	21,576(건)	21,404(건)	21,506(건)	23,035(건)	23,023(건)
불시점검(계)	17,590(건)	17,310(건)	17,073(건)	16,288(건)	15,565(건)
사망사고 조사	1,060(건)	1,114(건)	1,081(건)	1,043(건)	957(건)
불만제기	8,062(건)	7,716(건)	7,376(건)	7,055(건)	6,697(건)
참고조사	4,585	4,787	5,019	5,007	4,855
기타	3,829	4,807	3,555	3,183	3,056

미국은 산안법 처벌을 보면 위반의 종류별로 나누어 벌금을 부과 하고 있는데, 2008년 총 벌금액은 20,794,257\$이고 2007년의 14,835,056\$보다 40%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벌금 또한 2008년 41,658\$이고 2007년의 36,720\$보다 1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 위반에 관한 처벌은 강력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반사항의 총 벌금 금액과 평균벌금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며, 고의적(Willful)인 위반으로 인한 평균벌금은 2008년은 41,658\$이지만 이 벌금평균액은 다른 위반 벌금평균액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 것은 위반건수 중에서는 중대한(Serious)위반이(2008년 66,691건) 다른 위반건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대한 위반의 의미가 고의가 나타날 정도의 심각한 과실의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실제로 과실에 관한 처벌도 우리에게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 OSHA산재예방점검에 관한 활동을 보게 되면 그 집행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면 <표5>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의적 위반(외형적으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행위), 반복적 위반, 중대한 위반(과실정도가 높음), 분류되지 않은 위반, 시정조치위반,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한 위반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방OSHA 점검/집행 활동¹⁾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의적위반 (Willful)	위반건수	446	726	466	404	497
	평균벌금	\$ 29,908	\$ 43,294	\$ 32,158	\$ 36,720	\$ 41,658
	벌금총액	\$ 13,339,071	\$ 31,431,427	\$ 14,985,450	\$ 14,835,056	\$ 20,704,257
반복적위반 (Repeat)	위반건수	2,329	2,326	2,544	2,687	2,760
	평균벌금	\$ 4,005	\$ 3,635	\$ 3,758	\$ 3,660	\$ 4,077
	벌금총액	\$ 9,327,664	\$ 8,454,113	\$ 9,559,903	\$ 9,833,794	\$ 11,252,572
중대한위반 (Serious)	위반건수	61,334	60,662	61,085	66,852	66,691
	평균벌금	\$ 872	\$ 873	\$ 873	\$ 906	\$ 960
	벌금총액	\$ 53,467,165	\$ 52,965,118	\$ 53,298,790	\$ 60,547,314	\$ 64,046,607
분류되지 않은위반 (Unclassified)	위반건수	217	70	14	8	13
	평균벌금	\$ 10,111	\$ 21,525	\$ 39,904	\$ 23,960	\$ 36,523
	벌금총액	\$ 2,194,084	\$ 1,506,735	\$ 558,650	\$ 191,680	\$ 474,800
기타(Others)	위반건수	21,848	20,968	19,339	18,466	17,290
	평균벌금	\$ 130	\$ 154	\$ 164	\$ 188	\$ 215
	벌금총액	\$ 2,846,313	\$ 3,230,440	\$ 3,165,197	\$ 3,467,104	\$ 3,712,646
시정조치 위반 (Failure to Abate)	위반건수	301	302	278	199	167
	평균벌금	\$ 4,753	\$ 3,852	\$ 3,521	\$ 3,750	\$ 4,850
	벌금총액	\$ 1,430,693	\$ 1,163,394	\$ 978,825	\$ 746,209	\$ 809,935
총위반건수		86,475	85,054	83,726	88,616	87,418
평균벌금금액		\$ 955	\$ 1,161	\$ 986	\$ 1,011	\$ 1,155
총 벌금금액		\$ 82,604,990	\$ 98,751,227	\$ 82,546,815	\$ 89,621,157	\$ 101,000,817

미국의 OSHA 위반항목 중 2009년 위반항목의 상위10을 살펴보면 건축현장의 발판, 추락 방지, 유해성 주지 위반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위반항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7>의 연도별 OSHA 위반항목 TOP 10을 2002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건축현장에서의 발판에 관한 위반은 9,093건으로 추락(6,771건)이나 유해성주지위반(6,378건)보다 약 40%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축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축현장 발판과 추락, 사다리등의 위반에 관한 경우를 위반항목 10개중에서 보면 총43,430건중18,936건으로 전체 44%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건설업의 산안법 위반사례가 높은 것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처벌에서는 높은 비율로 위반에 관한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연도별 OSHA 위반항목 TOP 10)

순위	OSHA 위반항목	연도별 위반건수							
		2009(10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위	건축현장의 발판 (규칙 1926.451)	9,093	7,953	8,804	8,682	8,891	8,192	7,592	7,027
2위	추락 방지 (규칙 1926.501)	6,771	6,702	6,800	7,318	7,267	5,799	5,099	4,973
3위	유해성 주지 (규칙 1910.1200)	6,378	5,118	5,544	5,680	6,122	5,927	5,095	4,797
4위	호흡 보호구 (규칙 1910.134)	3,803	4,075	3,939	4,302	4,278	3,522	3,145	3,062
5위	잠금/표지 (규칙 1910.147)	3,321	3,796	4,506	4,304	4,051	3,218	2,973	2,937
6위	전기 배선 (규칙 1910.305)	3,079	3,106	3,112	3,337	3,077	2,488	2,412	2,524
7위	사다리 (규칙 1926.1053)	3,072	2,421	2,774	3,130	3,115	2,686	2,577	2,437
8위	산업용 트럭 (규칙 1910.178)	2,993	2,747	3,400	3,245	2,956	2,383	2,054	2,138
9위	전기 장치 - 일반요건 (규칙 1910.303)	2,556	순위 건밖	순위 건밖	순위 건밖	2,276	2,184	2,113	2,135
10위	기계 안전 - 일반요건 (규칙 1910.212)	2,364	2,219	2,233	2,399	2,348	1,847	1,848	2,016

<표 8> OSHA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활동(2003년~2008년)¹⁾

구 분		사고조사횟수	평균 벌금	총 벌금
2003	연방	1,504	\$ 6,756	\$ 7,120,953
	주정부	816	\$ 4,214	\$ 3,448,520
	전국	1,870	\$ 5,647	\$ 10,559,473
2004	연방	1,115	\$ 6,729	\$ 7,502,645
	주정부	890	\$ 5,121	\$ 4,557,757
	전국	2,005	\$ 6,015	\$ 12,060,402
2005	연방	1,131	\$ 6,651	\$ 7,522,700
	주정부	887	\$ 6,443	\$ 5,714,741
	전국	2,018	\$ 6,560	\$ 13,237,441
2006	연방	1,106	\$ 6,450	\$ 7,133,639
	주정부	950	\$ 5,675	\$ 5,391,602
	전국	2,056	\$ 6,092	\$ 12,525,241
2007	연방	1,051	\$ 11,364	\$ 11,943,175
	주정부	845	\$ 6,162	\$ 5,206,768
	전국	1,896	\$ 9,045	\$ 17,149,943
2008	연방	981	\$ 13,462	\$ 13,206,691
	주정부	783	\$ 8,615	\$ 6,745,272
	전국	1,764	\$ 11,311	\$ 19,951,963

4. 산업법 위반의 판례 경향

1) 고의적인 사업주의무 위반사례

2009년 10월 30일 OSHA는 BP Product²⁴⁾에게 총 \$87,430,000의 벌금을 부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벌금은 OSHA 사상 최고의 벌금이며 기존 최고의 벌금도 2005년 3월 텍사스에 위치한 정제소의 거대한 폭발 사고로 인해 15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이 회사에게 부과한 금액 \$21,000,000 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270개의 위반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1일당 \$7,000씩 30일의 위반일수로 총 \$56,700,000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OSHA는 추가적으로 439개의 고의적인 위반 (Willful violations)사항을 적발하여 위반사항당 \$70,000씩 총 \$30,700,000의 벌금을 부과하여 총 \$87,430,000의 벌금을 BP Product에게 부과하였다.

24) 텍사스 주 텍사스 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석유 채굴, 정유업체이다.

이 사례는 심각한 법위반으로 경고한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인한 위반사항 적발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이다. BP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악질(willful and egregious)이라고 판단하여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총 벌금 액수에서 보여 주듯이 최근 미국의 산안법 처벌강화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25) 또한, 이 사건은 사업주의 책임이 과실이 아니고 형사법의 고의로서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과실책임으로 처벌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OSHA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본사를 둔 G.S. Robins & Co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및 병원후송 사고에 대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연방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이 회사는 화학물질 재처리 및 공급업체로서 주요 위험화학물질의 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의 제공 및 사용 불이행, 근로자의 개인용 보호구 사용과 관련한 교육 미실시, Para-Nitroaniline(PNA)취급시에 대한 주의사항 미교육, 호흡용 보호구의 안면밀착 테스트 미 실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2) 심각한 사업주의무 위반사례

OSHA는 Bernuth Marine Terminal의 참사에 따른 안전위반으로 총 4개의 회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 하였다. 2009년 5월 부두노동자의 실종이 이틀째 계속되자 작업장의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OSHA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Miami 하역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배 위쪽의 컨테이너에서 작업 중에 바다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Miami 하역회사는 OSHA에 의해 근로자들이 배위에서 작업을 할 때 개인부양 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고의적인 위반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이 회사는 공업용 트럭의 관리 부실로 인한 고의적인 위반통지와 추가적으로 심각한 위반 6개가 드러났다. 심각한 위반은 고의와 유사하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심각한 과실의 일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sland Stevedoring, Bernuth Agencies 그리고 Marine Diesel 이들 세 회사는 위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OSHA의 특별 감사 책임자에 의해 위반사항이 적발 되었다.

Bernuth Agencies는 위의 Miami하역회사에게 인부들을 제공해주었고, Marine Diesel은 Miami하역회사에게 수리장비를 제공해주었으며, Island Stevedoring는 참사 후 Miami하역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맡고 있었다. Island Stevedoring는 2개의 고위 위반(willful violation)과 9개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 Bernuth Agencies는 5개의 심각한 위반과 Marine Diesel은 5개의 심각한 위반사항을 각각 적발하였다.

Miami하역회사는 \$196,600, Island Stevedoring은 \$90,000, Bernuth Agencies는 \$24,800 그리고 Marine Diesel은 \$7,500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였다.26)

25) 미국노동부 2009년10월30일자 뉴스.

26) 미국노동부 2009년11월3일자 뉴스.

이 사례는 참사의 원인이 된 회사는 물론 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회사들도 조사를 함으로써 참사가 일어난 후에 그와 관련이 된 회사들을 강력하게 처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미국노동자보호법안(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PAWA)

미국에서는 산안법의 규정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확장하여 처벌하는 등, 미국의 근로자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산안법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미국노동자보호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노동자보호법은 산안법을 현대화시키고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1) 법안 발의배경

2004년 Edward Kennedy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 되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 하자 올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공동발의자로 표기되어 있다.²⁷⁾

미국은 산안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설립된 후 표<4-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40년간 거의 400,000명의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미국노동자보호법은 추가적인 방법 등을 산안법에 제공하여 산안법이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욱 강력한 법이 되도록 하고 있다.²⁸⁾ 또한 국회의원이자 교육 노동위원회의 회장인 George Miller²⁹⁾는 미국노동자보호법에 의한 산안법의 강력한 벌금 규정을 촉구하였다.

2) 법안의 주요내용

PAWA는 우선 산안법위반에 관한 벌칙을 대폭 강화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적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규모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고의적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10년으로, 재차 위반 하였을 경우 1년의 징역형을 20년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벌금 규정에 관해서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Willful or repeated violation)으로 위반시 70,000불 이하의 벌금 규정을 120,000불 이하로 강화 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벌금을 5,000불에서 8,000불로 상향 하였다.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0,000불 이상 250,000불 이하로 강화 하였다.

27) 정선옥, “미국의 노동안전규제강화 :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 및 역할 확대”,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8월호, 59쪽.

28) <http://edlabor.house.gov/blog/2009/04/protecting-americas-workers-ac.shtml>

29) 조지 밀러는 PAWA의 법안과 관련하여 “벌금이 산안법집행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벌금들은 의미 있게 실현되어야 하며, 벌금은 위반의 억제 기능을 할 것이다. 벌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 이러한 집행체제가 단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serious violation)와 경미한 위반의 경우(other-than-serious violation)의 벌금 규정을 7,000불 이하 이던 규정을 각 위반사항에 12,000불 이하로 강화하였고 이 위반사항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20,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사업주의 정의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기업의 임원(any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으로 확장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PAWA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사업주나 책임 있는 기업의 임원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심각한 신체의 부상을 당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재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³⁰⁾

PAWA는 OSHA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등에 대한 보호규정강화와 OSHA의 법 집행 과정에 산재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참여를 확대 시키고 있다.

IV. 결론

미국은 OSHA설립이 후 많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최근의 미국노동자보호법안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안법 위반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벌금 규정을 촉구 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산안법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한 악질 사업주에 대해 매우 큰 벌칙금액을 부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반복하여 살펴보면 2008년 총 벌금액은 20,794,257\$이고 2007년의 14,835,056\$보다 40%증가하였고, 평균벌금 또한 2008년 41,658\$이 2007년의 36,720 \$보다 1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 위반에 관한 처벌은 강력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반사항의 총 벌금 금액과 평균벌금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의적(Willful)인 위반으로 인한 평균벌금은 2008년은 41,658\$이고, 반복적 위반의 평균벌금액은 4,077\$, 중대한 위반은 960\$로 고의적 위반에 비하여 평균액은 현저히 낮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고의적 위반의 벌금평균액은 다른 위반 벌금평균액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가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것이 과실에 관한 처벌건수가 높다는 것이다. 위반건수 중에서는 중대한(Serious)위반이(2008년 66,691건) 다른 위반건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로 부과하는 과실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미한과실로 분류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과실의 정도가 고의가 나타날 정도의 심각한 과실의 경우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위반사건 조사시에 과실

30) Eric J. Conn & Robert C. Gombar, "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A Plan To Give OSHA A Lot More Teeth", 『Mondaq Business Briefing』 Sep 16, 2009.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부과율과 벌금형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사업주의 과실도 명확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실제로 과실에 관한 처벌도 우리에게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주장하는 법안이 사업주의 책임을 강력히 인정하는 미국노동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산안법 처벌은 이보다 더 강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 참 고 문 헌

- [1] 노상헌, 「산안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 [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 2009.
- [3] 이상운, 「영미법」, 박영사, 2007.
-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7.
- [5]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고려법학」 제51호, 2008.
- [6] 전재경,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위반행위의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 [7]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7권, 2008.
- [8] 정선옥, “미국의 노동안전규제강화 :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 및 역할 확대”,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9.
- [9]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국제비교 연구-독일,미국,영국,일본,EU-」,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 [10] 조흠학,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13집, 2008.
- [11] _____,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11호, 2008.
- [12] _____, 「산재발생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 [13] 주창엽,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미국,영국,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2007.
- [1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1997.
- [15] _____,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와 활동 - 미국편」, 2008.
- [16] 한인섭,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형사정책」 제18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17] AFL-CIO, 「Death on the Job - The Toll of Neglect」, 2009.
- [18] David Ormerod., Richard Taylor.,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Criminal Law Review 2008.
- [19] DGUV, 「DGUV Statistics 2008」, 2009.
- [20] Eric J. Conn & Robert C. Gombar, "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A Plan To Give OSHA A Lot More Teeth", 「Mondaq Business Briefing」 Sep 16, 2009.
- [21] HSE,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2007/2008」, 2008.